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568

발의연월일: 2024. 10. 4.

발 의 자:정성호·안규백·이수진

윤후덕 · 김영진 · 권칠승

임광현 • 박민규 • 전용기

이기헌 • 최기상 • 박희승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는 현재 초연결 및 초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및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경쟁력과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유인 및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현행 법령은 현재 대부분의 인공지능 기술 개발 인프라가 수도권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는 현실을 간과하고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의 시설 투자에 대해 조세 감면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더욱이 인공지능 기술 사업화 시설은 기존 설비를 고도화하는 것만으로도 시설 투자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인공지능 기술사업 시설에 대한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의예외를 인정해도 법 취지에 반할 우려가 없음. 한편, 방위산업 및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음.

이에 인공지능(AI)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 시설에 대한 투자를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배제에서 제외하여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관련 시설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30조제1항·제2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1항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1 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중 인공지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중 인공지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로 정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제130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①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 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 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과 1990년 1월 1일 이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 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 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이전하여 설치 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에서 "1990년이후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 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 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 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 지역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 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1990 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 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 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 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 하는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에 있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u>대통</u> 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분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중 인
공지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
설에 투자하는 경우 및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2
제10조제
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
른 국가전략기술 중 인공지능기
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
자하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u>정하는</u>